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07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허성무·김문수·최민희

민병덕 · 손명수 · 이광희

김남희 • 박균택 • 김용민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제3항).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5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u>다만,</u>
<u>신설></u>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사
	<u>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u>
	<u>한다.</u>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시행으로 <u>2025년</u> 3월	② <u>2029년</u>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u>2025년</u> 2월 28	<u>2029년</u>
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창원가정법	
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u>2025년</u> 2월	③ <u>2029년</u>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	
지원 및 거창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	
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	<u>202</u>
5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u>9년</u>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및 거창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